

수능 부정행위 예방 관련 안내문

수능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 훈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더하여 아래 ①~⑤유형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도 제한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능 부정행위 유형 및 조치

부정행위 유형	제재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②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당해 시험 무효,
③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차년도 수능
④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응시자격 정지
⑤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⑥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⑦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⑧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당해 시험 무효
⑨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⑩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⑪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 및 휴대 가능물품의 종류

〈반입 금지물품: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음〉

-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 ☞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미제출 시 부정행위로 간주)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음.
 - ☞ 1,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시, 휴대한 시계를 신분증·수험표 등과 함께 책상 위에 의무적으로 옮겨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시계를 점검하도록 함

〈휴대 가능물품: 시험 중 개인소지 가능〉

-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흰색, 0.5mm),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계

※ 수능 시험실 휴대 가능 시계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계임.
-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휴대 가능하나,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휴대 불가

2021학년도 수능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관련 주의사항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탐구영역 2과목 선택 수험생)

1	4교시 탐구영역(사회·과학·직업) 제1선택 과목 문제지와 제2선택 과목 문제지 빼냄 ↓
2	문제지 상단에 성명, 수험번호, 응시 순서(1 또는 2) 기재 ↓
3	제1선택 과목 문제지 한 부만 책상 위에 올려두고, 제2선택 과목 문제지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문제지(표지 포함)는 반으로 접어 제2선택 과목 문제지와 함께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음. ↓
4	문제가 보이지 않게 답안지를 제1선택 과목 문제지 위에 올려놓고, 본령이 울릴 때까지 조용히 대기

4교시 탐구영역 문제지 양식

4교시 답안지 양식

※ 2020학년도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2020학년도 문제지 및 답안지를 예시로 제시함